**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칙**

**텍스트, 폰트, 로고, 그래픽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목차**

**학 생 회 칙**

전문 ································································································ 1

제 1 장 총 칙 ··················································································· 2

제 2 장 인문예술대학 학 생 총 회 ························································· 3

제 3 장 인문예술대학 대 의 원 회 ·························································· 4

제 4 장 인문예술대학 상 임 위 원 회 ····················································· 6

제 5 장 단 과 대 학 운 영 위 원 회 ···················································· 7

제 6 장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정 학생회장 및 부 학생회장 ························· 9

제 7 장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집행국 ······················································ 11

제 8 장 학부/트랙 학생회 ··································································· 12

제 9 장 비상대책위원회 ··································································· 14

제 10 장 재 정 ················································································ 16

제 11 장 선 거 ················································································ 17

제 12 장 회 칙 개 정 ······································································· 18

부 칙 ······························································································ 19

**선거 시행 세칙 ····························································** 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함)라 정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건학정신인 진리, 지선을 바탕으로 민주인으로서의 학교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설치)**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대학원생은 제외하며 휴학, 정학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운영 및 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학생회비를 미납한 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1) 학생회비를 인준 받는 학생 자치 기구에서 진행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단과대학 학생회, 과, 학부, 트랙 학생회로서의 활동을 제한한다.   
   3) 2)에 따라 단과대학, 트랙학생회, 과(부)학생회, 신설기구는 학기별 학생회의 구성원 조직도를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조직도에는 학생회 구성원의 이름, 학부(과), 학번, 직책,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포함한다.)  
   4) 조직도 제출 기한은 학기당 국원 선출 후 30일 내에 제출한다.

**제 5 조 (구성)**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인문예술대학 대의원회, 인문예술대학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둔다.

**제 6 조 (겸직 금지)**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3. 총대의원회 정의장과 부의장
4. 학생복지위원회 정위원장과 부회장
5. 동아리연합회 정회장과 부회장
6. 인문예술대학 트랙 및 학과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7.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위 학생회의 국장
8. 인문예술대학 트랙 및 학과 학생회의 국장과 국원
9. 교내 언론기구 국장과 국원
10.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겸직금지를 임시 해제한다.

**제 2 장 인문예술대학 학생총회**

**제 7 조 (지위)**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8 조 (구성)**

본 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 9 조 (권한)**

1. 학생총회는 본 회의 활동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2. 본 회의 존립 및 회원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0 조 (의장)**

1. 의장은 인문예술대학 정학생회장이 맡는다. 정학생회장 궐위 시는 부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정 , 부학생회장이 모두 탄핵, 소추 중이거나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다.

**제 11 조 (소집)**

1. 인문예술대학 학생총회는 정학생회장, 인문예술대학 대의원총회, 인문예술대학 상임위원회, 인문예술대학 운영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정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건에 관해서 정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임시학생회의 경우 11조 1항에 준하고 정학생회장이 부재 시 소집된다.
4.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총회소집 24시간 전에 공고한다.

**제 12 조 (개회 및 의결)**

1. 회원 1/1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2.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중요사항은 전체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인문예술대학 대의원총회**

**제 13 조 (지위)**

본 회의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최고의결기구이다.

**제 14 조 (목적)**

본 회 학생의 대의기관으로서, 각 기구 및 학생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회의 효율적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5 조 (구성)**

본 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대의원)**

1. 대의원은 본 회 전체 트랙, 학과(부)의 각 학년별 대표 1인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학과 대의원 1학년은 제외한다.)
2. 서양화, 동양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전공을 제외한 1학년 대의원은 6명으로 한다.
3.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대의원은 각과 선출 후 대의원 조직국에 등록함으로써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5. 대의원은 대의원 선거 시 대의원의 연락처를 후보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갖는다.

**제 17 조 (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단 필요시 의장은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18 조 (의장)**

1. 의장은 인문예술대학 대의원회를 대표한다.
2. 의장은 인문예술대학 정학생회장이 맡는다.
3. 정학생회장이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 19 조 (임기)**

대의원 임기는 회계 연도에 준한다. 단, 임의적으로 한학기로 할 수 있다.

**제 20 조 (징계)**

인문예술대학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회칙을 어겼을 때.
2. 대의원이 직무를 해태한 때.
3. 총회(상임위원회의) 결석 1회 또는 지각 및 조퇴의 합이 2회일 때.

**제 21 조 (징계방법)**

1. 의장은 전조의 징계사유가 있는 대의원에 대하여 우선 경고한다.
2. 당해 대의원이 경고에 불구하고 의장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문예술대학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대의원의 의원직 박탈 안건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징계에 의해 제명된 대의원의 해당 학과(부), 트랙, 전공의 학년은 당해 잔임 기간 동안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4. 박탈당한 대의원의 경우 대의원 비교과 포인트, 장학금 등을 미지급한다.

**제 22 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2. 회칙 개정의 발언권
3. 인문예술대학 학생 총회의 소집 요구권
4. 학생회비 심의 및 승인권
5.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승인권
6. 예산 결의안의 심의 및 승인권
7. 결산 심의권
8. 학생자치기구의 회장 및 위원장 탄핵권
9. 운영 위원 및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
10. 기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
11. 이 외에 총학생회칙 제 23조 (업무 및 권한) 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 23 조 (소집)**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희의 경우 총학생회칙 제 24조 (소집) 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상임위원 1/2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전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4. 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대의원 자격을 가진 자의 과반수의 등록 시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의결)**

1. (일반 정족수) 제 23조에 규정된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 중 아래의 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4, 5, 6, 7, 9, 10, 11, 12항)
2. (특별 정족수) 제 23조에 규정된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중 2(3)항과 8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 4 장 인문예술대학 상임위원회**

**제 25 조 (구성)**

1. 대의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상설기구이다.
2. 상임위원은 각 트랙, 학과(부)별로 2학년, 3학년, 4학년 중 대의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 26 조 (업무 및 권한)**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인문예술대학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2. 단대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회칙 개정안
3. 탄핵의 소추
4.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5. 집행부의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 및 사업
6. 본 회의 경리, 서무 및 기타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7. 대의원총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대의원총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8. 상임위원회는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9. 필요한 경우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임무 완료시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체된다.
10. 기타 대의원총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11. 상임위원은 매 학기 초에 각 학과(부), 트랙, 전공 학생회로부터 학기의 수입을 보고 받을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12. 상임위원은 매 학기 말에 각 학과(부), 트랙, 전공 학생회로부터 학기의 지출을 보고받아 감사하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13. 상임위원은 각 학과(부), 트랙, 전공 학생회로부터 수입과 지출을 보고받아 검토한 후 해당 내역을 총대의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제 27 조 (소집)**

1. 정기총희의 경우 총학생회칙 제 24조 (소집) 에 따른다.
2.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상임위원 1/2 이상의 요구 또는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의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전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4. 상임위원회는 당해 연도 대의원 자격을 가진 자의 과반수의 등록 시 소집할 수 있다.

**제 28 조 (의결)**

1. 제25조 1,2항을 따른다.

**제 5 장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제 29 조 (지위)**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운영기구이다.

**제 30 조 (구성)**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 인문예술대학 부학생회장, 인문예술대학 학과 학생회장 및 부회장, 인문예술대학 트랙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31 조 (조직)**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그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장,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기타기구를 둘 수 있다.

**제 32 조 (의장)**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이 된다. 단, 사고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된다.

**제 33 조 (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의 발언권
2. 인문예술대학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3. 인문예술대학 대의원총회 소집요구권
4. 기타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34 조 (의결)**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5 조 (임기)**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의장 및 의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6 조 (소집)**

단대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회와 임시운영회를 둔다.

1. 정기 단대운영위원회는 학기 중 매달 1회 이상으로 한다.
2. 임시 단대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 37 조 (지위)**

1. 정학생회장은 본 단과대학의 모든 학생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장과 집행국의 장이된다.
2.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 및 단대운영위원이 된다.
3.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정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본 회의 정-부학생회장은 학생대표로서 학교의 제반 운영위원회의 참석, 본 회원의 권익을 위한 발언권을 갖는다.

**제 38 조 (임기 및 선출)**

1.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준한다.
2.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자격은 당해 연도에 준한다.
3. 정학생회장 궐위 시는 부학생회장이 잔임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임 기간이 5개월 이상일 때는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4. 부학생회장이 공석인 경우 단대운영위원회는 후보 1인을 선임, 인문예술대 대의원총회를 통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한다. (단, 정학생회장의 판단 하에 공석으로 둘 수 있다.)
5.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정-부학생회장 탄핵 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정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6. 단, 당해 연도 총선거 이후 후대가 존재하지 않을 시 임기와 자격은 다음 년도 1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제 39 조 (정학생회장의 임무 및 권한)**

1. 단대운영위원회, 집행국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2.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와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3.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정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4. 집행국의 각 국장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할 수 있다.
5. 본 회 회원들의 요구와 의사를 수렴하여 인문예술대학 학생자치 및 최고행정에 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본 회의 대표로서 모든 제반사항의 보고 의무를 진다.
7.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8. 기타 정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7 장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집행국**

**제 40 조 (지위)**

집행국은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41 조 (구성)**

1.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집행국은 정부 학생회장 및 필수인 4개(총무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의 부서를 두며 필요시 타부서를 둘 수 있다.
2. 각 부서의 국장은 인문예술대학 정-부 학생회장이 직접 선출하며 각 부서의 국원은 회장단과 국장단의 학생회 면접 후 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그 인원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 42 조 (업무 및 권한)**

집행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진행한다.
2. 집행국의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국은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4. 집행국 제반활동을 집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되 운영의 목적에 맞춰 자율적으로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5. 총무국 : 본 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6. 홍보국 : 본 회의 운영 및 행사의 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기획국 : 본 회의 모든 행사의 기획을 담당한다 .
8. 운영국 : 본 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담당한다.

**제 8 장 학과/트랙 학생회**

**제 43 조 (지위)**

학과/트랙 학생회는 단과대학 내에 존재하는 각 학과 및 트랙의 최고 기구이다.

**제 44 조 (구성)**

1. 학과/트랙 학생회는 당해 학과 및 트랙 정원으로 구성한다.
2. 학과/트랙 학생회는 정-부 학생회장(학과), 트랙회장(트랙)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45 조 (정, 부학생회장)**

1. 학과/트랙 학생회장은 당해 학과 및 트랙 학생회를 대표하며, 정-부학생회장 및 트랙회장은 단대운영위원이 된다.
2. 학과 학생회는 부학생회장을 두며 정학생회장이 부재 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3. 학과/트랙 정-부학생회장 및 트랙회장은 임기기간 중 학과/트랙 변경을 할 수 없다. (변경 시 즉시 그 자격 박탈에 대한 대의원총회 소집 후 자격 박탈을 결정한다.)

**제 46 조 (임기 및 선출)**

1. 학과/트랙 정-부학생회장 및 트랙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준한다.
2. 학과/트랙 정-부학생회장 및 트랙회장의 자격은 당해 연도에 준한다.
3. 정학생회장 궐위 시는 부학생회장이 잔임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임 기간이 5개월 이상일 때는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4. 부학생회장이 공석인 경우 해당 학생회내의 회의를 거쳐 후보 1인을 선임,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 대의원을 소집하여 단과대학 소속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한다. (단, 정학생회장의 판단 하에 공석으로 둘 수 있다.)
5. 단, 당해 연도 총선거 이후 후대가 존재하지 않을 시 임기와 자격은 다음 년도 1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제 47 조 (업무 및 권한)**

1. 학과/트랙 학생회는 해당 학과/트랙 내의 진행되는 모든 자치활동을 주관한다.
2. 학과/트랙 학생회는 자치회비로 자치활동을 운용한다.
3. 당해 학과/트랙의 자치활동을 수행하며 단대운영위원회의 업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4. 정-부학생회장 및 트랙회장은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 48 조 (자치내규)**

학과/트랙 학생회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과/트랙 학생회 자치내규에 따른다. 단, 해당 학생회의 자치내규가 없을 시는 본 회칙을 따른다.

**제 9 장 비상대책위원회**

**제 49 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가 무산되거나 각 학생자치기구의 정, 부대표의 탄핵, 사고, 궐위 등으로 인한 부재 시 각 자치기구가 성립될 때까지 해당 자치기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0 조 (구성)**

1.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된다.
2. 해당 자치기구 선거의 무산
3. 해당 자치기구 정, 부 대표자의 탄핵 및 궐위
4. 비상대책위원회는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인문예술대학 트랙 및 학과 학생회 중 하나 이상의 자치기구가 제 51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5. 비상대책위원회는 제 51조 1항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경우, 단대운영위원중 2인을 각각 비상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겸임하도록 한다.
6.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을 추천하여 단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7. 비상대책위원회 정-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이라 칭한다.
8.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1 조 (선출)**

1. 단대운영위원회는 제 51조 1항에 해당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단, 공고는 선거 종료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72시간 이내에 진행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사유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4.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회의는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임명한다.
5.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의 선출 공고는 선출 이후 24시간 이내 공고한다.

**제 52 조 (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자치기구의 대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2.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이 궐위-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을 대행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을 경우 그 직을 승계한다.)

**제 53 조 (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해당 자치기구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모든 회의체에서 발언권만 인정된다.)

**제 54 조 (집행국)**

1. 비상대책위원회 집행국은 해당 단위 집행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2. 비상대책위원장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필요할 경우 집행국을 구성할 수 있다. (단, 집행국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을 맡은 단위의 집행국에 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제 55 조 (해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학생자치기구 선거 종료와 동시에 해체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 10 장 재정**

**제 56 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57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년으로 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결산과 감사를 실시한다.

**제 58 조 (학생회비)**

1. 본 회의의 학생회비는 학기 별 등록 시 납부하는 학생회비를 의미한다.
2. 학생회비 납부액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제 59 조 (자치회비)**

1. 본 회의의 소속된 학부/트랙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각 기간별 납부하는 학생회비를 의미한다.
2. 자치회비 납부액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3. 자치회비는 각 학생회로 이월되며 학생회비와 달리 사용하여야 한다.

**제 60 조 (예산편성)**

총학생회칙 제 85조에 해당한다.

**제 61 조 (준예산집행)**

총학생회칙 제 86조에 해당한다.

**제 62 조 (자치회비 집행)**

학부/트랙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자치회비의 경우 총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총학생회칙 중 감사시행세칙에 해당한다.)

**제 63 조 (심의 및 승인)**

총학생회칙 제 87조에 해당한다.

**제 64 조 (예산집행 및 추가경정예산)**

총학생회칙 제 88조에 해당한다.

**제 65 조 (공고)**

본 회의 각 자치기구는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및 결산 내역, 자치회비 집행 내역을 10일 이내 10일간 공고한다.

**제 66 조 (예산관리)**

학생회비 징수, 관리는 학교당국에 위임하되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 및 대의원장의 결재에 따른다. 자치회비에 경우는 제 51조를 따른다.

**제 11 장 선거**

**제 67조 (선거시행세칙의 목적)**

본 선거 시행 세칙은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단(각 과의 정ㆍ부학생회장 및 각 트랙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8 조 (기본이념)**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제 69 조 (적용범위)**

* 1. 본 선거시행세칙은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에 속한 트랙 학생회장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과의 학생회장은 트랙의 대표로서 지위를 갖는다. (인문예술대학 소속 과학생회장은 회화과, 무용학과의 학생회장을 일컫는다.)
  3. 각 과의 부학생회장은 트랙의 대표로서 지위를 갖는다. (인문예술대학 소속 부학생회장은 회화과, 무용학과의 부학생회장을 일컫는다.)
  4. 트랙 학생회장은 각 트랙의 대표로서 지위를 갖는다. (인문예술대학 소속 트랙 학생회 장은 한국어교육, 지식정보문화, 디지털인문정보학, 영미문화콘텐츠, 영미언어정보, 역사문화큐레이션, 역사콘텐츠 학생회장을 일컫는다.)
  5. 각 과의 정ㆍ부학생회장 및 트랙 학생회장 선거는 본인의 해당 1 트랙 소속으로의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역사문화큐레이션 트랙 학생회장 선거는 글로컬역사 트랙 소속으로의 출마를, 영미 문화콘텐츠 트랙 학생회장 선거는 영미문학문화 트랙 소속으로의 출마를 허용한다.)
  6.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7. 본 규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에도 없는 사항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 위원회 및 각 선거 후보자와의 합의에 의해, 또는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 70 조 (선거시행)**

* 1. 선거는 매년 11 월에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선거로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당해 연도 인문예술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적정 시기에 시행한다.

**제 71 조 (세칙 해석의 기준)**

* 1. 이 세칙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이 세칙 전체의 논리 적 체계성에 비추어 선거의 민주성,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자 독단의 자의적 해석은 지양하도록 한다.
  2.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의 의결로 해석을 확정한다.

**제 72 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의 회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 (투표일 10 일 전) 등록 확인된 재학생으로 한다.

**제 73 조 (피선거권)**

선거의 입후보자들은 선거세칙 8 조의 자격기준을 따른다.

**제 74 조 (입후보자 자격기준)**

1. 4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인문예술대학 재학생 (단, 부학생회장의 경우 2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등록학기 전체 평점이 1.88 이 넘는 자
3. 입 후보 당시 현재 재학 중인 자
4.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 75 조 (후보 등록)**

1. 인문예술대학 과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트랙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등록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원서(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2) 후보자의 재학증명서

3) 후보자의 성적증명서

4) 후보자 별 공탁금 1 만원

5) 총학생회비 납부 증명서

6) 사퇴서 (입후보자가 현재 본교 학생회 및 공개기구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 - 해당기구의 직인이 찍힌 ‘사퇴서’를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7)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은 회원 25% 이상의 추천서(단, 대면 추천서를 받기 어려운 경 우, 총칙 4 조 1 항에 따라 인문예술대 선거관리 위원회의 온라인 세칙을 따른다.)

8) 후보자 포스터: 선거운동본부 이름, 후보자 이름 및 약력, 공약사항, 후보자 사진을 포함하여야 함. 사이즈는 가로 세로 1 : 1.4 비율인 jpg 파일로 규정함.

9) 기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 76 조 (후보 사퇴 경우)**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한다.

**제 77 조 (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출마할 수 없게 될 때는 즉시 낙산의 메아리에 공고한다.

**제 78 조 (후보가 없는 경우)**

1. 후보자 공석, 모든 후보의 사퇴, 사고 혹은 등록 무효 처분으로 후보자가 없으며, 당대 학생회의 임기 내에 재선거가 불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직위 담당자(현 공고일 기준 과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해당 트랙의 트랙 학생회장)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
2. 후보 등록 후 사퇴, 박탈, 낙선 등의 사유로 출마하지 못한 후보는 내년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3. 재선거 후보 등록 후 사퇴, 박탈, 낙선 등의 사유로 당선되지 못하였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제 79 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인문예술대학 회장단, 각 과의 정ㆍ부학생회장단과 트랙 학생회장, 각 과 상임위원,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국장, 학과 및 트랙 학생회 간부를 포함한 30 인 이하로 한다.
2.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마감 5 일 전에 구성을 발의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참여할 수 없다.

**제 80 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권한)**

1.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2. 선거를 올바른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3. 선거시행세칙과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합의한 선거방식에 대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후보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공정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사례가 있을 시,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5.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6. 5 항의 일정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 마감 5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81 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 연도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 1 인으로 한다. 단,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부재인 경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된 사항을 확정 공고한다.

**제 82 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개회 및 의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3 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투표 결과를 공고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단, 이의 신청은 당선 확정 후 24 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제 84 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금지사항)**

1.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동안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 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와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 후보자의 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건의한다.
3.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 85 조 (선거운동)**

선거 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게 하거나 당선을 얻는 행위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유세기간 시작일 자정부터 투표 전날 23 시까지로 한다.

**제 86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선거관리위원
2. 선거권이 없는 자(졸업생, 휴학생, 타 단대생 등)
3. 구임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4. 구임 과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또는 트랙 학생회장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기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본다.)
5. 공개적인 학생회 집행국장 및 부장
6. 단, 등록 마감일까지 사임한 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7 조 (선거운동 금지사항)**

1.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하지 아니한 보도 및 방송,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확성기, 녹음기, 불법 현수막 등) 사용,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지 아니한 유인물의 배포나 선전 게시물 부착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2. 학교 밖 선전 게시물 및 선거에 대한 홍보물 부착은 금지한다.
3. 상대 후보자의 선전 게시물 위에 선거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
4. 상대 후보자의 선전 게시물을 훼손시킬 수 없다.
5. 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8 조 (선거운동본부장 및 참관인)**

1.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에 선거운동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책임질 선거운동본부장 1 인을 임명해야 한다.
2. 선거운동본부장과 참관인은 후보자의 판단 하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자격을 박탈 당하였을 경우 후보자는 새로운 선거운동본부장과 참관인을 지정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 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3. 선거운동 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선거 기간 내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의 대표로써, 선거 진행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 협조한다.

2) 선거본부위원장은 본 선거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시행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을 갖는다.

3)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 기간 내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 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본부원 1인을 대리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4. 후보는 투표 당일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봉인과 이동을 참관해야 하는 참관인 1인을 임명해야 한다.

5. 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되며 참관인 업무를 제외한 선거운동본부의 활동을 제한한다.

6.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봉인과 이동은 정해진 시간에 하며, 정해진 시 간에 참관인이 참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경고 1 회를 징계한다. 지각은 주의 1 회를 징계한다.

**제 89 조 (선거운동본무장 및 참관인 자격)**

선거운동본부장 및 참관인은 후보자 등록 서류에 명시된 자여야 한다.

**제 90 조 (선거관리)**

1. 입후보자의 기호는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와의 합의하에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으며, 공통된 기호를 사용한다. 단, 기호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2. 모든 선전 게시물 관련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득한 게시물만을 게시해야 한다.
3. 수기 자보의 경우 자체 제거일을 기록해야 하며, 선거유세기간 동안은 각 동아리 및 과 행사자보 및 포스터의 이동을 제의한다.

**제 91 조 (투표)**

투표는 이틀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성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 6장을 따른다.

**제 92 조 (신분확인)**

한성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 6장 58조에 따른다.

**제 93 조 (투표절차)**

한성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 6장 57조에 따른다.

**제 94 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1.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원은 5m 안으로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

**제 95 조 (개표)**

1. 개표사무는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2. 개표는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3. 표의 유, 무효의 기준은 한성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 6장 65호에 따른다.

**제 96 조 (개표소)**

1. 개표소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른다.
2. 개표소에서의 질서유지는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3. 후보자는 개표 종료 시까지 학내에 잔류하고 있어야 한다.
4. 개표 장소에는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운동본부장, 참관인만이 입장할 수 있다.

**제 97 조 (개표의 기준)**

1. 개표의 기준은 투표용지의 수, 꼬리표, 선거인명부 순으로 한다.
2. 투표용지의 수와 꼬리표의 차이는 전체투표오차라 한다.

**제 98 조 (당선의 기준)**

1. 당선 기준은 단선과 경선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단선인 경우, 총 유권자 과반 수 이상의 투표, 투표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경선인 경우, 총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1 위 득표자와 2 위 득표자와의 득표차이는 전체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여야 한다. (초과하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 99 조 (당선공고)**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개표 후 12 시간 안에 공고한다.

**제 100 조 (재투표)**

1. 1 위 득표자와 2 위 득표자의 득표차이가 전체투표오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재투표 를 실시한다.

2. 재투표 실시일정에 관한 사항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단,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재선거의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 101 조 (이의제기)**

1.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공고 게시 이후 48 시간 이내에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장과의 서면을 통해 신청한다.

3. 이의신청의 결과는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후,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 원 과반 수 이상 참석, 참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02 조 (선거무효)**

선거부정이 인정될 때와 투표율이 미달되었을 때 또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에 대한 소송이 있을 때에는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세칙위반 여부를 즉시 심의하고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거 전에는 입후보 등록의 자동 취소와 당선 후라도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된다.

**제 103조 (보궐 선거)**

1.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시에는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공고하고 공고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였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었을 때)

4. 단,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12월 보궐 선거의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 104 조 (재선거)**

1. 아래 두 가지 항을 재선거라 정의한다.

2. 선거가 투표율 미달 또는 기타 원인으로 12월 보궐선거를 시행하였으나, 이 역시 당선 이 되지 않았을 때, 다음 년도 3월 중에 시행하는 선거이다.

3.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 3월 중에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 회에 등록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 시행하는 선거이다.

4. 단,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재선거의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 105 조 (재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재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선거에 따른 제반 사항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06 조 (이의제기권자)**

1.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선거 유세 시작 후 투표 마감일 23 시까지 각 선거운동본부장 만이 할 수 있다.

2.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7 조(이의제기의 처리)**

1.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3. 찬성과 반대가 동률이라면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8 조 (징계 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109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 회는 경고 1 회에 해당하고, 경고 3 회 시 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 110 조 (징계의 통보)**

1. 시정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2.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후보가 이를 3 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 당후보에게 경고 1 회를 부여한다.

3.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경고 공고 게시 12 시간 이내에 공개사과문을 인문예술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와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한다.

**제 111 조 (징계의 의결)**

징계의 의결은 인문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제 12 장 회칙개정**

**제 112 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하나 중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발의
3. 본 회 회원의 1/10 이상의 발의
4. 상임위원회 2/3 이상의 발의

**제 113 조 (공고)**

회칙개정의 발의 시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되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공고 후 20일 이내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 114 조 (의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대의원은 등록 대의원 의장이 공포한다.

**제 115 조 (공포)**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정학생회장이 공포한다. 정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공포한다.

**제 116 조 (공고)**

확정일로 10일 이내에 공고한다.

**부 칙**

1. (효력발생) 본 회칙은 공포 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별 지**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칙 개정 내역**

제 41대 총대의원회 ‘청월’

**2025년 2월 1일**

**전면제정**

총대의원회 의장 이 연준

총대의원회 부의장 이 수민

총대의원회 정책국장 김 민규

제 8대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INTRO’

정학생회장 김 형기

부학생회장 이 지우

**(제정 사항)**

전문

1. 총칙
2. 인문예술대학 학생총회
3. 인문예술대학 대의원회
4. 인문예술대학 상임위원회
5. 단과대학운영위원회
6.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7.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집행국
8. 학부/트랙 학생회
9. 비상대책위원회
10. 재정
11. 선거
12. 회칙개정

부칙

제 41대 총대의원회 ‘청월’

총대의원회 의장 이 연준

총대의원회 부의장 이 수민

총대의원회 정책국장 김 민규

-- 학생회 ’’

정학생회장 0 00

**2025년 3월 20일**

**개정**

부학생회장 0 00

(학생회칙 담당 집행국장)

**(개정 사항)**

1. 2장 학생총회 00조 0항 오류 수정
2. 0장 ---- 00조 0항 명칭변경
3. 학생회칙 10장 00대 동아리연합회 개정
4. 학생회칙 11장 12장 13장 동아리연합회 신설로 인한 조항 순서(00조~00조) 변경

**(개정 항목)**

학생회칙 00조, 00조, 00조, 00조, 00조, 00조, 00조, 00조

**(신설 항목)**

학생회칙 00조, 00조, 00조, 00조, 00조, 00조